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9 선고 2023가합83064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

담당변호사 김종화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4. 25.

판 결 선 고 2024. 5. 9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8. 1.부터 2023. 11. 1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,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, 원고와 피고 C,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C, D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 2,000,000,000원 중 1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2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중 제1, 2, 4, 5항 부분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C, D에 대한 청구

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,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마치 부산 강서구 E 외 8필지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위에 창고 및 운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·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.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재판장 판사 이상원, 판사 이나경, 판사 정재우

별지